

즉흥적인 스톡옵션 도입, 이런 점에 유의하라

글 / 조 완석 (공인회계사)

지

난 감사시즌때의 일이었다. 신생 벤처회사인 A사는 설립 3년째였으며, 기술평가로 벤처인증을 받은 범적인 벤처회사였다.

이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기술벤처와 유사하게 CEO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력이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수준의 이익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의 돌파구로 회사의 대표는 3년간 개발에 지친 우수한 기술진을 회사에 남아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공로를 평가, 개인별로 차등적인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했다.

계약서만 있고 정관에는 없는 스톡옵션

우리는 이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유는 회사의 정관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그 부여 사실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처음 이 회사의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회사에 스톡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스톡옵션이 부여되지 않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의 주요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회사와 임직원들과의 스톡옵션에 대한 계약서가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스톡옵션 도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스톡옵션은 우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정관은 통상 회사가 최초 설립되는 시점에 회사의 설립 목적, 운영 방법 등 주요 사항

에 대한 사규와 같은 성격의 문서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당연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인 회사가 상법의 절차를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한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 공고에 2주가 소요되며, 다시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2주가 소요된다.

실무적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과 겹쳐도 되는 기간으로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를 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는 명의 개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권예탁원이나 기타의 금융기관에서 주주명부 폐쇄업무를 도와 준다.

이 경우 통상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확정 주주명부를 작성하는데 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소집공고는 이 확정된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발송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 주주총회를 하기 위한 실무적인 기간은 약 40일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조세혜택 받아

스톡옵션과 관련된 상법 등의 규정에서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스톡옵션의 부여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만 조세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스톡옵션 부여 사실은 상업등기 사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신고는 명시된 기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법인등기의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다.